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김건호 청년보좌역의 교육부 직원으로서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참여에 대한 감사
2.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감사
3. 한경국립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처리 부적정,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 중등교육연수원 표적감사 및 부당해고, 총장 노래방 접대 강요 등 비위에 대한 감사
4. 전문위원회 비공식적 담합 사건 등 국가교육위원회 파행운영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감사
5.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

제안이유

1. 김건호 청년보좌역의 교육부 직원으로서 ㈜한국학력평가원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참여에 대한 감사

친일·독재 옹호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초고를 작성했던 김건호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은 2023년 12월 검정심사 신청서에 본인의 근무처(소속)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남. ㈜한국학력평가원이 2023년 12월 11일 교과서 검정 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교과용도서 검정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김 보좌역의 근무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 기재돼 있었음. 그러나 김 보좌역의 군포시청소년재단 실제 재직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었으며, 2023년 11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청 신청 안내 자료'에 따르면 "저작자는 검정 신청일(2023년 12월 11일~14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김 보좌역은 저작자가 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보좌역은 근무처를 속여 저작자 자격위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음.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종 검정합격 공고(2024년 8월 30일) 전에 김 보좌역의 저작자 요건 위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검정 합격시켰음.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실검정과 김 보좌역의 특정 출판사 특혜로 볼 수 있으므로 감사가

필요해 보임.

2.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감사

교육부는 고교 역사검정 교과서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에 교육부 관계자인 김건호 청년보좌역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에도 없는 기준을 넣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안내는 행정오류로 추정”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특히 표지갈이를 통해 출판 실적을 조작하고, 검정교과서의 편집자로 자격 미달의 인물을 등재한 ㈜한국학력평가원에 대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 국정감사 대부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였음. ㈜한국학력평가원은 17년 전 출판했던 교재를 최신 개발 교재인 것처럼 발행 등록을 하고 인쇄본을 제작했으며, 거짓으로 제작한 출판물을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채 국립중앙도서관에만 납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적이 있음. 결과적으로 ㈜한국학력평가원은 해당 납본 증명서를 이용해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얻어내 최종적으로 교과서 검정에 통과하였음. 검정당국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정을 승인한 것임. 더불어 ㈜한국학력평가원 검정교과서의 편집자 중 한 명은 앞서 언급한 출판 실적 조작에 직접 관여한 인물임. 해당 인물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책임 편집자로 등재되었지만, 그가 실제로 해당 출판사에

서 근무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임. 또 국민연금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학력평가원의 상근 직원 수는 3명을 넘지 않으며, 회사는 5년간 사실상 출판 실적이 없는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음. 이처럼 표지갈이, 교육부 소속 집필진, 실제 근무가 의심되는 편집자 등의 절차적 문제만 봐도 ㈜한국학력평가원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정상적인 검정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이 같은 사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과서 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결과로 보임. 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교과서 검정 사업에 무자격 업체가 참여하여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규정을 무시한 절차상의 문제를 방치한 점은 중대한 행정적 실책임. 따라서 해당 문제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를 요구하는 바임.

3. 한경국립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처리 부적정,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 중등교육연수원 표적감사 및 부당해고, 총장 노래방 접대 강요 등 비위에 대한 감사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의 여대생 접대 강요 의혹부터, 대학원 조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표적 감사 의혹, 교직원 부당해고 등 각종 비위 의혹이 드러남. 먼저, 총장의 접대 강요 및 성적 차등 배정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지난 2009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이 총장이 여학생들을 지인 접대에 동원하

고, 노래방에서 남성과 짝을 이루어 앉도록 강요했다는 증언이 제기되었음. 일부 학생에게는 성적을 차등 배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이 요구됨. 또 직장 내 괴롭힘 및 교직원 부당해고사건은 대학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며, 직장 내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심각한 문제임. 대학원 조교의 학습권과 근무 환경이 침해받고, 교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상황은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바, 이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한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함. 더불어, 중등교육연수원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조사되어야 함. 특정 인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 감사가 존재했는지, 감사 권한이 부당하게 남용된 정황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일련의 비위행위는 한경국립대학교가 지켜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임.

4. 전문위원회 비공식적 담합 사건 등 국가교육위원회 파행운영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감사

지난 7월 18일 국가교육위원회 제16차 전문위원회 개최 전, 일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고교평준화 폐지 등 교육 현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정책 관련 '비공식적 담합 논의'를 시도함. 해당 시도가 발각되며 일부 전문위원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8월 8일 입장문을 내고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또 "전문위원회의 중차대한 역할을 감안해 향후 쇄신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쇄신 발전 방안 마련은커녕 이배용 위원장은 진상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비공식적 담합 논의를 시도한 전문위원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였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논의에서 핵심적인 단위임.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문위원회 쇄신방안도 마련하지 않음. 이에 따라 8명의 전문위원이 이배용 위원장의 리더십에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문위원회 논의 참여를 보이콧하며 현재까지 파행 수준에 이르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이고, 전문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는데 전문위가 독단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문위 파행운영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정확히 규명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논의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7건 적발되었으며,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특히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는 날, 연가 중에도 전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차량 유류비, 하이패스 및 톨게이트 비용 등을 공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수행에 필요한 '출장조치' 시에만 공용차량 사용이 가능하며, 단순한 '방문'이나 '식사' 목적의 차량 사용은 사적 사용으로 간주 됨. 최근 판례에서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임. 이배용 위원장의 경우, 국가교육위원장 외에도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장과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 등의 직책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도 사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또한, 국가교육위원장이 외부행사나 공식 출장이 없던 날에도 청사 내 차량 출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무단이탈 사례가 38건 적발되었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됨. 또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을 제외한 총 근무일 409일 중 9시 이전에 정상 출근한 날이 10%(38일)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습적인 지각과 직무 소홀은 기관장의 조직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간주 됨.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원의 사적 사용을 경시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임.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의 사적 사용과 직무 태만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청구하는 바임.